

「구미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지역계획 수립·시행, 통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 통합지원협의체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3조)
-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개인정보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 합 의: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
- 기 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 결과,

- 중증 돌봄 대상자도 시설 입소에만 의존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 지원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 대상자 개인별 필요에 맞춘 서비스 연계·조정이 가능해져 돌봄 공백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불필요한 시설입소를 줄임으로써 가족의 부담 경감과 지역 돌봄체계의 효율성·지속 가능성 제고,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안 제14조에서 “제5조에 따른 통합지원 사업에 속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문장 구조상 이를 곧바로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제5조 사업 전반을 전문기관에만 위탁하는 취지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
- 제5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위탁 대상과 위탁 범위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여, 전문기관 위탁이 필요한 사업과 일반 수행기관이 담당할 수 있는 사업을 구별함으로써 행정 효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통합돌봄 제도가 기존 복지·보건·요양 서비스와 형식적으로 병렬 운영되지 않도록, 부서 간 역할 분담과 협업 체계를 명확히 하고 실제 조정 기능이 작동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전담조직 및 통합지원 창구 설치 이후, 대상자 발굴·판정·연계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오히려 복잡해지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운영 매뉴얼을 조기에 정비해야 할 것임.